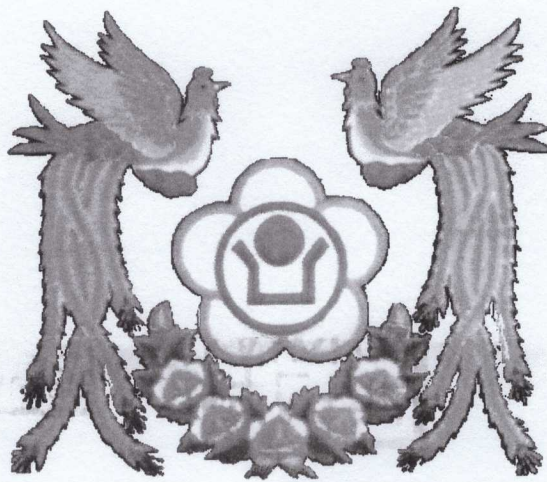


정 관

(2020.7.24. 수정)



사단법인 이웃나눔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8 (금사동)
T(051)523-5255 F(051)523-7255

사단법인 이웃나눔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웃나눔회” (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법인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어려운 불우이웃과 소외된 노인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므로 인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8 (금사동)에 둔다.

제 4조(사업)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불우한 노인 생활 지원사업
2.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노인교실 운영
4. 평생교육 시설운영
5. 위 사업에 관련 부대사업 일체
6. 후원자 모집을 통한 기부금 모금활동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자(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회원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조(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8조(회원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 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이사를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2인
- 3 이사는 5인에서 25명 이내로 둔다.(대표이사 포함)

4 감사 2인 이하

제 10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 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 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
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
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문자 또는 전화로 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총회소집의 특례)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이사회이 결의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때

제 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예.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서 제안한 사항과 이사회이에 위임한 사항
4. 기타 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5.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제 19조(의결정족수)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3.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 있을 때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 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회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지 회

제 26조(지회의 설치 및 운영) 1.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2.지회는 지회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에 따른 지회 회칙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법인의 목적과 동일한 사업을 실행 할 수 있다.

4.기타 세부사항은 지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각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를 겸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 27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8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 29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예산, 결산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수익 사업

제 35조(수익사업) ①법인은 제 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사업을 운영한다.

1. 이웃나눔가게 (일반 음식점)

②제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 9 장 사무 부서

제 36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과 사무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9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의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 1차 정관 개정 2015.03.24.

제 2차 정관 개정 2016.07.10.

제 3차 정관 개정 2019.12.10.

제 4차 정관 개정 2020.07.24.

